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정 2009. 05. 27.
개정 2015. 10. 01.
개정 2015. 12. 21.
개정 2016. 05. 02.
개정 2016. 11. 30.
개정 2019. 09. 09.
개정 2021. 09. 28.
개정 2022. 11. 04.
개정 2023. 10. 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06.>

제2조(구성) ①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임기 만료 2개월 전(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인해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 구성을 의결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임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함으로써 그 기능이 종료된다.

<개정 2016.11.30.> <개정 2021.9.28.>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미만,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진흥원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1.> <개정 2021.9.28.>

④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시 ‘진흥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기관의 직급별 대표자회의, 구성원의 투표 등 기관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추천된 자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다만,

추천 절차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조와 협의하여 이사회가 진흥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21.>

⑤ 진흥원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진흥원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진흥원의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8.>

⑥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 · 경제계 · 언론계 · 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⑦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진흥원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⑧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자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재채용 · 인재추천 · 인사컨설팅 등 인사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비상임이사의 추천과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5.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후보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3. 후보자의 모집과 추천의 기준 · 방법 · 심의 등에 관한 제반사항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은 재의결을 실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제6조(후보자의 모집) ①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 추천 또는 공모와 추천을 병행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6.5.2.> <개정 2023.10.06.>

②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2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에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④ 추천방식에 의하여 임원 후보자를 모집할 경우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인사혁신처(국가인재DB),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5.2.>

⑤ 제4항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개 모집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5.2.>

제7조(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① 임원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개모집 시에는 자격요건을 공고문에 명시한다. <개정 2015.10.1.> <개정 2019.9.9.> <개정 2022.11.4.>

1. 기관장

- 가. 최고 경영자로서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비전 및 장기발전 전략을 가지고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의지를 갖춘 자
- 나.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 다. 조직 관리능력 및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개혁 및 변화를 추구하려는 경영의지와 추진력을 보유한 자
- 라.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공직윤리의식을 갖춘 자

2. 상임감사

- 가.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능력을 갖춘 자
- 나.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자
- 다.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공직윤리의식을 갖춘 자

3. 상임이사

- 가. 상임이사로서 조직혁신과 발전을 위한 리더십과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자
- 나.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 다.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공직윤리의식을 갖춘 자

4. 비상임이사

- 가.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 나.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 다.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공직윤리의식을 갖춘 자

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노동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자

② 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거쳐 3배수 내지 5배수로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조항신설 2015.10.1.> <개정 2023.10.06.>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진흥원 인사관련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
2. 기타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협조요청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 및 관계자 등은 후보자의 모집·심의·추천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